

## 스토킹처벌법 정부(법무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쟁점과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조 제 성\*\*

###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톱킹처벌법)이 정부(법무부) 개정안으로 통과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현실을 매우 잘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톱킹처벌법의 정부(법무부) 개정안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의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시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델파이조사 결과 개정된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전자감독제 시행에 대해 의견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이후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스톱킹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스톱킹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 지원 및 안전조치가 더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각 요인이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델파이조사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2가지 키워드(반의사불벌죄, 전자감독)가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 및 안전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스톱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개선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처벌을 권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찰경력(오래될수록), 업무가중, 소극적인 피해자 대상 업무처리에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델설명력 43.6%로 결과에 따른 인력 재배치 검토, 업무개선,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소극적인 피해자의 신고기피에 대한 대안이 요구됨을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6.30.2.1>.

❖ 주제어 : 스톱킹 전담 경찰관, 소극적 스톱킹 피해자, 업무개선, 반의사불벌죄, 델파이조사

\* 이 연구는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스톱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I. 서론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이후 스톱킹 행위에 대한 범위와 스톱킹 범죄에 대한 기준 등 여러 개선에 대해 쟁점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스톱킹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 개정안은 2023년 7월 11일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 이전의 스톱킹처벌법은 1) 과태료 벌칙 규정에 대한 부적합성, 2) 안전조치 중 긴급응급조치 위반 및 불이행시 형사처벌 규정 제한, 3) 긴급응급조치 변경, 취소 및 기각의 경우 스톱킹 행위의 상대방, 법정대리인 및 담당 경찰관에게 통지규정 마련, 4) 스톱킹 피해자를 위한 국선번호인 선임 특례의 필요성, 5)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었다(조제성·이선행·임정재, 2022: 195). 개정된 법안은 앞서 언급된 이전 스톱킹처벌법의 맹점을 잘 보완하고 있었다. 개정 내용이 현장 경찰과 학계 등 현장과 전문가의 합의된 의견과 상당부분 일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추가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 마당에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있어서 불필요 혹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실상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보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하고 싶다.

올해 7월 시행된 스톱킹처벌법 개정 법률은 스톱킹을 반의사불벌죄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스톱킹 범죄로 신고를 하게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 당연한 처사 혹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스톱킹 범죄의 90% 이상이 관계기반 스톱킹이라는 점이다(조제성 외, 2022: 160). 이는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스톱킹 행위 또는 스톱킹 범죄를 하는 주체는 전 남자친구 혹은 전 남편,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직장 동료나 아는 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기반 스톱킹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배제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 소극적인 피해자의 입장

에서는 신고를 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된다. 전 남편, 전 연인 혹은 아는 지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부담감에서부터 관계기반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처벌보다 상황의 개선을 더 원하기 때문에 신고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조제성 외, 2022: 197). 이러한 상황은 사건 자체가 또 다른 심각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토킹을 그대로 두게되어 배회 또는 감시형에서 점진형의 양상이 될 경우 살인, 성범죄 등의 사전 징후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Mullen et. al., 1999; 강소영·김한솔, 2021: 178 재인용).

이미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었기에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사전에 대응되어야 하는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가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현장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개선에 주목하고자 한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타 업무의 특성과 다르게 피해자와 라포형성을 통해 또 다른 심각한 범죄로 발전되기 전 상황을 포착하고 적절한 안전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기술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개선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계기반 스토킹에서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면 주의해 보아야 할 점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전 폭력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경험이 유·무는 스토킹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발전되는데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Bonta. J., Law. M. & Hansom. K., 2003: 1372-1379). 이러한 부분은 스토킹전담경찰의 콜백 및 모니터링 상황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업무개선을 통한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이 매우 요구된다 하겠다. 관련해 국내 연구에서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스토킹으로 판단된 행위 특성을 스토킹 목적, 구체적인 행위, 스토킹 행위자의 반성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강소영, 2022: 55-84). 이는 스토킹전담경찰관과 피해자 사이 라포형성을 통해 기록에 없는 내용을 수집할 필요성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선 논의에 근거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상황에서 관계기반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까지 매우 망설일 수 있다는 특성과 그에 따른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사건처

리에 소극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개선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다. 관련해 주요 요인으로 1) 인력배치에 대한 고민, 2) 업무부담의 해소에 대한 고민, 3) 스토킹전담업무의 적합성 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업무개선 관련 정책제언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관계기반 스토킹과 처벌불원

스토킹처벌법 개정내용은 전자감독, 구성요건 상 적용 한계(충간소음, 주차분쟁, 불법 추심 등)에 대한 논의<sup>1)</sup> 등 아직까지 많은 이견이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대응되어야 할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어떠한 이유로 귀결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반 스토킹의 경우 처벌불원은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개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기반 스토킹 상황에서 신고가 더 어려워지게 된 피해자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비교적 최근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90% 이상 아는 사이였고, 이 중 과거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혀졌다(김잔디, 2022: 51). 하지만 이러한 국내 정서와 실태가 반영된 스토킹 처리 절차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첫 시행 이후에도 없었다(이현정, 2021: 271). 더욱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더욱 그 필요성에 대해 간과할 것에 대해 우려된다. 특히, 국내 정서에 맞게 사건이 경미하다고 느끼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려할 때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이규호·김정동, 2022: 40). 해외에서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더욱더 입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시점인 지금 더욱더 스토킹전담경찰관

1)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전, 강소영·이완희(2021)는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대해 충간소음 등에 대한 내용을 예로 들어 긴급성 또는 보충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을 제언함

및 관련 부서의 경찰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 해외에서는 스톱킹 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범죄에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지와 이전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 또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NPCC & CPS, 2018; 강지은·김성현·이수정, 2021: 116 재인용). 세심한 관심의 요구는 또다시 업무의 가중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때문에 업무의 개선에 업무가중을 감소시키고 이와 별개로 스톱킹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콜백 및 모니터링이 개인에게 적합한 업무인지 역시 확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업무개선은 스톱킹 사건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혹시 모를 스톱킹에 의한 심각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보복의 두려움과 처벌불원

### 가. 범죄피해 대응 의지와 두려움

우리나라 스톱킹은 매우 높은 비율로 관계기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관계기반을 전 연인 또는 전 남편에 국한 시키더라도 그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비중<sup>2)</sup>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청년 및 중장년을 모두 포함해 전 연인에 의한 스톱킹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장(스토킹전담경찰)의 경험에 근거한 비율이 48.9%에 달했다(조제성 외, 2022: 160). 이는 특히나 1인 가구와도 연결 지어 생각하여 볼 수 있는 부분으로 20대에서 30대의 1인 가구가 관계기반 스톱킹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1인 가구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범죄두려움과도 관련 있다. 범죄두려움은 피해자학을 포함한 모든 범죄두려움 주제의 연구<sup>3)</sup>를 살펴보았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김연수, 2022: 64-65). 특히, Ferraro(1995)의 위험해석모델에서는 범죄피해의 위험성에 대해 미시수준의 범죄두려움 그리고 거시수준의 요인이

2) 조제성과 연구팀이 스톱킹전담경찰관 대상 경험 및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 연인 또는 전 남편의 스톱킹 비율을 64.8%로 보고하였다(조제성 외, 2022: 160).

3) 해당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이론적 논의는 범죄피해모형, 취약성모형, 무질서 모형, 이웃통합모형 등이다.

인지되면 위험성이 자극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스토킹 범죄의 피해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스토킹 범죄보다 아는 지인 혹은 전 연인의 스토킹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시적, 미시적 수준의 범죄두려움이 낮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해석<sup>4)</sup>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범죄두려움의 해석수준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고찰<sup>5)</sup>이 요구되고 이는 스토킹 사건의 처리에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 개인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주관적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위험인식이다(김연수, 2022: 64). 때문에 발생확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젊은 여성 1인 가구라면 스토킹에 대해 덜 위험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논거가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묻는다면,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현장 경찰에서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에서 소극적인 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우려로 귀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놓칠 수 있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도 스토킹전담경찰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민감성이 더 강조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대응의 차원에서 업무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 나. 보복 및 재범과 처벌불원

개정 이전의 스토킹 신고에 대한 112 신고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형사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기반 스토킹과 재신고 여부였다(한민정, 2021: 55). 이는 스토킹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사건 자체로서 접근하기보다 과거 이력과 행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관계기반 스토킹과 보복 및 재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전 처벌불원의 매커니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외 연구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또는 법정 불출석의 이유가 보복

4) 이 경우에서 전 연인이 데이트 폭력의 경험이 있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은 배제된 상태의 주관적 판단을 기술한 것이다.

5)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로 피해자(특히, 20-30의 젊은 여성 1인 가구)의 현재 상황을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지 혹은 위험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는지 경찰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Buzawa. E. S., & Buzawa. C. G., 1996: 87).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관계기반 스토킹과 보복 및 재범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실증하기도 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자 체포보다 문제행동에 대한 중지 또는 경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Mastrofski. S. D., Snipes. J. B., & Supina. A. E., 1996: 269). 다른 유형의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관계기반에서 충분히 행위자의 처벌보다 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 처벌보다 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연인 등 관계성에 의한 연민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보복과 재범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정에 대해 관계기반 범죄에 대해서 스토킹을 명확히 명시하며 주거가 특정됨에 따른 두려움이나 범행전력에 의한 재범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자신의 주거지가 노출(관계기반인 경우 그러한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된 상태에서 그리고 가족이나 여러 정보가 이미 과거 공유된 상황에서 보복과 재범으로 인한 적극적인 처벌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황정용, 2022: 344-345).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보복우려 및 재범에 대한 판단<sup>6)</sup>에 신중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물리적 시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특히, 이 연구에서는 소극적인 피해자에 대한 신고 권유)를 위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재 업무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는 보복우려 등 현장 사정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재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황정용, 2022: 346).

### Ⅲ.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가. 자료수집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2년 수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스토킹전담경찰관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결측치를 제외하고 89건의 응답 데이터를 최종 활용했다. 당시 경찰청에서 발표된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전국 279명으로 전체 모집단의 32.62%가 표집된 결과물이다. 이 외에도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본문에 인용된 델파이조사 결과물은 현장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법률, 스토킹,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개선, 스토킹의 특성 등 포괄적인 부분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시켰다. 1차 개방형 질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된 의견을 재구성하여 2차 선다형 질문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한 결과이다.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전자감독제 시행이 합의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처벌불원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의지에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나. 분석방법

활용된 데이터에서 종속변수로 피해자가 처벌을 망설일 경우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한계를 느끼는지에 대한 문항을 활용했다. 즉,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처벌을 망설이는 상황에 대해 대안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처벌 권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한 것이다. 이에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스토킹 전담 경찰의 업무에 대한 업무가중 그리고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느끼는지 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변수의 정규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으며, 변수의 공분산 확인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VIF 계수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회귀분석에 적합한 변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종적으로 처벌불원 시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처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 IBM SPSS Statistics 26.0을 활용했다.

## 2. 측정도구

###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데 한계가 있다(5점척도)”로 스토킹 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른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처벌 권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당 변수를 활용한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는 1) 우리나라 스토킹의 경우 90% 이상<sup>7)</sup>이 관계기반 스토킹이라는 점, 2) 소극적인 피해자의 경우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처벌하게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즉, 관계기반 스토킹인 경우 전 애인, 전 남편을 신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특성(소극적인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조제성 외, 2022: 19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를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 나.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처음 연구가 설계되고 조작적 정의되는 과정에서 업무기중, 심리적 부담,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을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심리적 부담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다(5점 척도)” 문항이 업무로 인한 부담감인지 혹은 안전조치가 아닌 보호 및 지원 업무에 대한 업무 불수용성에 대한 부담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최종적으로 업무기중과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 2개 변수로 분석을 실시했다.

7) 스토킹 전담 경찰관 대상 경험 및 인식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토킹 행위자는 전 연인(48.9%), 지인(28.1%), 전 배우자(15.9%)로 포괄적인 의미로 지인을 관계기반 스토킹에 포함한다면 93.9%가 관계기반 스토킹이 된다(조제성 외, 2022: 9).

업무가중의 경우 “다른 업무가 과중되어 보호 및 지원 업무에 열심을 다 하기 어렵다(5점척도)”와 “제한된 시간 안에서 피해자의 말을 모두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다(5점척도)”를 합산 후 평균을 내 활용했으며,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은 “스토킹 피해자가 소극적이어서 업무처리가 어렵다(5점척도)” 문항을 변수로 활용했다. 업무가중과 고객(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에 영향을 준다(조정의·주성빈, 2018: 264-265).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따라 2개 문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처벌 권유의 적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다. 통제변수

이 연구의 통제변수는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별, 연령, 경제수준등을 다루기보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라는 특성이 통제될 수 있도록 성별, 겸업여부, 경찰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별은 여성을 준거집단으로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처벌 권유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겸업 여부 역시 준거집단을 겸업(부)로 정해 겸업 상태에서 처벌 권유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경력의 경우 과거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온정주의로 받아들여졌던 과거 인식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3가지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주요 변수인 업무가중과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이 처벌 권유의 적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3. 연구가설 및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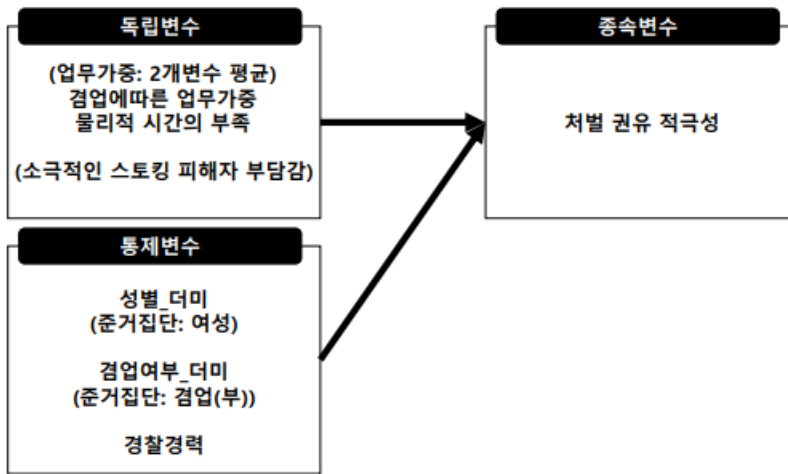
연구모형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에 기반해 몇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 가설 1. 남성인 경우 처벌 권유 적극성이 낮아질 것이다.
- 가설 2. 겸업 상태인 경우 처벌 권유 적극성이 낮아질 것이다.
- 가설 3. 경찰경력이 많을수록 처벌 권유 적극성이 낮아질 것이다.
- 가설 4. 업무가 가중될수록 처벌 권유 적극성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5. 소극적인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처벌 권유 적극성이 낮아질 것이다.

통제변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그 선행연구의 결과가 상이하나 논문의 저자로서 스톱킹 전담 경찰관을 현장에서 밀접하게 관찰한 결과 남성인 경우보다 여성이 적극적이고 또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히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다. 또한 겸업여부는 업무의 가중과는 다른 것으로 겸업 자체가 업무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이 연구설계에서는 겸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권유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IV. 분석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가. 인구사회학적 변수 빈도분석

이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3.8%, 여성이 46.2%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겸업의 경우 83.5%가 겸업중이라고 응답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스톡킹 전담 경찰관이 겸업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의 경력은 3년 이하 25.3%,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 23.1%, 7년 이상에서 13년 미만이 26.4%, 13년 이상이 24.2%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 구 분   |                | N  | %    |
|-------|----------------|----|------|
| 성별    | 남성             | 49 | 53.8 |
|       | 여성             | 42 | 46.2 |
| 겸업 여부 | 겸업(부)          | 15 | 16.5 |
|       | 겸업(여)          | 76 | 83.5 |
| 경찰 경력 | 3년 이하          | 23 | 25.3 |
|       |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  | 21 | 23.1 |
|       | 7년 이상에서 13년 미만 | 24 | 26.4 |
|       | 13년 이상         | 22 | 24.2 |

#### 나. 주요변수 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연구의 독립변수(업무가중, 소극적인 스톡킹 피해자 부담감)와 종속변수(처벌 권유 적극성)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왜도(-.516 ~ -1.161)와 첨도(.129 ~ 3.130)가 절대값 기준 정규성을 가정하는 범위의 계수<sup>8)</sup>로 나타났다(서원진·이수민·김미리혜·김재중, 2018:

8) West, Finch와 Curran(1995)은 왜도와 첨도의 통계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각 계수의 절대값이 왜도의 경우 2 이하 첨도의 경우 7 이하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본다.

178).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구 분  |                  | 평균   | 표준 편차 | 왜도     | 첨도    |
|------|------------------|------|-------|--------|-------|
| 독립변수 | 업무가중             | 3.84 | .829  | -.520  | .293  |
|      | 소극적인 스톱킹 피해자 부담감 | 3.82 | .889  | -.516  | .129  |
| 종속변수 | 처벌 권유 적극성        | 4.26 | .728  | -1.161 | 3.130 |

독립변수로 활용된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통해 계수가 0.6 이상의 계수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절대값 기준 .016에서 .338 사이의 계수로 나타나 공분산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구분 | 1        | 2       | 3       | 4       | 5 |
|----|----------|---------|---------|---------|---|
| 1  | 1        |         |         |         |   |
| 2  | -.075**  | 1       |         |         |   |
| 3  | -.234**  | .016*** | 1       |         |   |
| 4  | -.044*** | -.072** | -.073** | 1       |   |
| 5  | .065***  | -.178** | .047*** | -.338** | 1 |

1 : 경찰경력

2 : 검업여부

3 : 성별

4 : 업무가중

5 : 소극적인 스톱킹 피해자 부담감

#### 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 처벌 권유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찰경력, 업무가중, 소극적인 스톱킹 피해자 부담감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자면,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데 한계가 있다(5점척도)”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혹시 모를 상황(관계기반 스톱킹의 경우 처벌을 꺼려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성의 한계에 대한 부분이다. 즉,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경찰의 스톱

킹 사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이론적 배경을 통해 제시한 바 이에 대해 처벌에 대한 권유에 한계가 있다고 느낀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업무개선의 근거로 삼기 위함이었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3가지 변수를 살펴보면, 경찰의 경력이 오래되었을수록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권유에 대한 한계가 감소<sup>9)</sup>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중에 대해서는 겹겹, 물리적 시간 부족 등이 합산되어 평균을 낸 변수로 업무가 가중될수록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처벌을 권유하는데 한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 부담감은 말 그대로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부담감이 높을수록 처벌을 권유하는데 한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콜백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했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처리에 적극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유하는데 한계를 갖도록 하는 요인은 업무가중과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업무의 가중을 해소하고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와의 라포형성 등 콜백 및 모니터링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모를 사건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이다. 해당 결과는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4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스토킹 처벌 권유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 구분                 | B         | S.E. | t        | VIF   |
|--------------------|-----------|------|----------|-------|
| (상수)               | 2,090     | ,348 | 6,002    |       |
| 성별_더미              | ,019      | ,119 | ,158     | 1,067 |
| 겹겹_더미              | ,145      | ,159 | ,913     | 1,059 |
| 경찰경력               | -,148     | ,053 | -2,769** | 1,071 |
| 업무가중               | ,253      | ,075 | 3,368*** | 1,159 |
| 소극적인 스토킹 피해자 부담감   | ,375      | ,071 | 5,319*** | 1,188 |
| F                  | 29,233*** |      |          |       |
| R <sup>2</sup>     | ,468      |      |          |       |
| 수정된 R <sup>2</sup> | ,436      |      |          |       |

9) 해당 분석결과는 다른 연구모형을 통해 다시 분석해봐야 할 부분으로 경험에 따른 권유 부담감 감소 등 후속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 V. 결 론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정부(법무부)의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그 필요성과 국민의 정서가 잘 반영되었다고 감히 평가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면, 1) 처벌불원에 의해 협박, 합의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2) 사건처리 중간 처벌불원 시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일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3)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한 피해자의 합의 유도 사례가 발견된다는 우려, 4)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스톱킹에 대한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 다른 대상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처 사건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할 대상자, 소극적인 성향으로 사건의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상자, 특히, 관계기반 스톱킹 상황에서 두려움과 재범 또는 보복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이지 않거나 상황의 개선만 요구하는 대상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느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응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으로 경찰(특히, 스톱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개선을 강조하고자 했다. 최근 연구에서 업무개선이 피해자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업무처리에 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적이고 질적인 방법론을 통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제성 외, 2022: 60).

연구결과 스톱킹 사건 처리에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데 한계를 느끼도록 하는 유의미한 변수는 업무가중과 소극적인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방법들로 해소되거나 보완될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른 3가지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로 1) 인력배치에 대한 고민, 2) 업무부담의 해소에 대한 고민, 3) 스톱킹전담업무의 적합성 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인력배치와 스톱킹전담업무의 적합성 파악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스톱킹전담경찰관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업무에 몰입하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이미 배치된 경찰 대상의 자기분석이 될 것이다. 자기분석을 통해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콜백 및 모니터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체계화를 통해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스토킹전담경찰관 대상의 연구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성별에 대해 그 차이<sup>10)</sup>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조제성 외, 2022: 181). 때문에 실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업무부담의 해소에 대한 부분은 인력의 충원이라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문직제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경찰 내 전문직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스토킹 사건의 처리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라포형성과 상담 및 심리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콜백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직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콜백 및 모니터링을 하나의 상담으로 인식함에 따라 업무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거부감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적절한 인력 배치와 함께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높여가는 전략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아주 협의적인 연구 문제로 시작되었다. 연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경찰(특히,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개선이 결국 피해자의 보호 및 안전조치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업무개선과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극히 일부의 비율일 수 있겠으나 소극적인 피해자, 관계기반 피해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범죄피해에 대해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실증적인 분석 결과 역시 업무가중과 소극적인 피해자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야 사건 처리에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작은 담론으로 취급하기보다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되길 희망한다.

10) 조제성 외(2022) 연구팀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역할과 피해자 지원 상담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더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소영. (2022). “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톱킹범죄의 특성과 진단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 55-84.
- 강소영·김한솔. (2021).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톱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5): 160-185.
- 강소영·이완희. (2021).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적용 및 한계”. 『한국경찰학회보』 23(6): 250-276.
- 김연수. (2022). “범죄두려움의 해석수준과 심리적 거리 연구 - 위협해석모델의 확장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21(2): 59-66.
- 김잔디. (2022). “스토킹처벌법상 스톱킹범죄의 성립요건 - ‘반복’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4(1): 45-70.
- 강지은·김성현·이수정. (2021).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5(2): 97-128.
- 서원진·이수민·김미리혜·김제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 이규호·김경동. (2022). “스토킹범죄와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사법행정』 63(4): 39-48.
- 이현정. (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4): 265-284.
- 조정익·주성빈. (2018). “델파이(Delphi) 방법을 통한 사법경찰관의 업무과중화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5(3): 253-276.
- 조제성·이선형·임정재·고가영·이근호. (2022).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민경. (2021).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 『형사정책』 33(1): 39-65.
- 황정용. (2022). “현행법 체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고찰: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4): 333-354.

[국외문헌]

- Bonta, J., Law, M. & Hanson, K. (1998).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3(2), 123-142.
- Buzawa, E. S., & Buzawa, C. G. (1996), *Domestic Violence: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2nd ed.). Sage.
- Ferraro, Kenneth.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Mastrofski, S. D., Snipes, J. B. & Supina, A. E. (1996), Compliance on Demand: The Public's Response to Specific Police Reques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3), 269-305.
- Mullen, P. E., Purcell, R., & Stuart, G. W. (1999). "Study of stalk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8): 1244-1249.
- West, S., Finch, J., & Curran, P.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A Study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Passage of the Government(Ministry of Justic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nd Police Support for Victims\*

Cho, Je Seong\*\*

This study addresses issues regarding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at need to be considered once again even though the it has been passed as a government(Ministry of Justice) amendment. Al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s amendment to the Stalking Punishment Act reflected the practical problems very well, the Delphi survey of the field and experts show that there are areas still need to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Delphi surve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onsensus on the abolition of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o even after the amendment, complementary institutional changes are required.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additional supplementation in order for handling stalking crimes and support and safety measures for victims to be carried out well. Therefore, throug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required for better handling stalking crimes and support and safety measures for victims, and to provide relevant recommendations so that each factor can be reflected in real worl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lack of consensus on the two key words(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at were not agreed upon in the

---

\* This study utilizes data collected in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police support for victim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in 2022.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First author)

Delphi survey,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affect the handling of stalking crimes and victim support with safety measures, limited to improving the work of stalling police officer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bles that had a negative impact on recommending punishment to unpunished victims were police experience (the longer the police career), heavy workload, and difficulty in dealing with passive victims. This result, with a model explanatory power of 43.6%, suggests that the police should consider reassigning personnel, work improvement, and an alternative to the avoidance of reporting of passive stalking victims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Implications and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 Key words: Stalking Police Officers, Passive Stalking Victims, Work Improvement,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Delphi survey